

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

제정 2020. 7. 24 조례 제3227호

제1조(「안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안양동 377번지”를 “안양로 3(안양동)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안양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호계동 764의 5번지”를 “경수대로 504(호계동)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안양시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안양동 219의 9번지”를 “시민대로 34(안양동)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비산동 278-12”를 “평촌대로401번길 62(비산동)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.

제6조(「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.

제7조(「안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안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지 1

■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[별지 제2호서식]

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				
문서번호 : -				
수 신 : 귀하(주 소:)				
「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(승인/불승인)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.				
신청인	성 명			생년월일
	주 소			이용대상자와의 관계
이용대상자	성 명			생년월일
	주 소			
장애 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영구장애 (장애)		<input type="checkbox"/> 일시적 장애 ()	
차량 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		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 차량	
이용 기간	년 월 일부터		년 월 일 까지	
결정 사유				
년 월 일 안양시장(이동지원센터장) (인)				

210mm×297mm

